일반직원교육·봉사실적심의위원회규정 3-1-16

규정번호 3-1-16
제정일자 2017.2.27
최근개정 2024.7.24
개정차수 3차 개정
관리부서 총무회계팀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우리대학 일반직원교육·봉사실적심의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기획실장, 교무처장, 사무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총장이 위촉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팀장 3명, 6급이하 4명(직급별)으로 구성한다.(개정 2018.08.27)

②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제3조(위원장) ①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고, 회의를 통할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.(개정 2024.7.24.)

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.

1. 일반직원 교육평정영역에 관한 사항
2. 일반직원 봉사평정영역에 관한 사항
3. 기타 일반직원교육·봉사평정과 관련하여 총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(개정 2024.7.24.)

제5조(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관련부서 협조) 위원장은 제4조 사항에 관계있는 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협조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7조(주관 등) 회의는 사무처에서 주관하며, 간사는 사무처장이 담당 업무 부서 직원으로 지명한다.(개정 2017.02.27., 2018.08.27.)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되,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② (팀제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) 제2조 제1항 및 제7조는 2010년 3월 1일부터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한다.

1. “과장”을 “팀장”으로 한다.
2. “사무처 총무과” 를 “사무처 총무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하되,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.(제3조제2항, 제4조제3호)